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현황과 전망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므로 연계제도 이용여부가 개인의 인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전제하에 공적연금간 이동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연계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적용 현황 및 인식 조사를 통해 연계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함

1. 도입배경 및 현황

□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 배경

- 2003년 철도청 민영화를 계기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2009년 8월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지 않거나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음
 - 극단적인 경우 공무원연금에 19년 가입하고, 국민연금에 9년 가입하여 총 28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적연금 연계제도임

□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내용

-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예로 공무원연금에 10년 가입한 뒤 국민연금에 추가로 10년 가입하면, 즉 양 연금제도의 총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양쪽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만큼 해당연금제도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의 주요골자임

□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 현황

- 2008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적연금 연계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 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할 수 있음
- 2010년 11월 말 현재 공적연금 연계신청 가능건수가 55,334건인 반면, 연계 신청건수는 1,000건 이하임
 - 연계 신청건수가 가능건수에 비하여 적은 원인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인데 비해, 직역연금은 60세 이전에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받고 연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 향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자의 연금 수급연령이 모두 60세 이상이 되면 연계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표 1〉 연계제도 신청 및 지급 현황

(단위: 건)

구분	신청건수					지급건수
	계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합 계	967	781	92	93	1	48
2009년	212	137	34	40	1	10
2010년	755	644	58	53	0	38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연계제도를 통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월)은 2010년 11월말 현재 최고 1,130,550원, 최하 16,890원, 평균 459,759원임

2. 연계제도에 대한 인식¹⁾

□ 연계제도 인지 여부

-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0.3%가 '알고 있거나 들은 적 있다' 고 응답하였고, '모른다' 는 49%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계제도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40대와 50대 응답자의 경우 '연계제도를 알고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 의 비중이 60% 이상 차지함
 - 29세 이하 응답자 중에서는 학생시절 파트타임 근무, 잦은 직장이동경험 등으로 인해 본인이 연계제도 대상자임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모른다' 고 응답한 비중이 58.5%를 차지하고 있음
- 향후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1) 보건복지부에서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1주년(2010년 8월 7일)을 맞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자 2천명과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재정리하였음(자세한 내용은 윤석명 외(2010)「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식조사」참고)

〈표 2〉 연계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알고 있다	들은 적 있다	모른다	관심없다	계
전체	412(29.2)	298(21.1)	690(49.0)	9(0.6)	1,409(100.0)
29세 이하	23.1	17.9	58.5	0.5	571(40.5)
30대	29.2	23.8	46.2	0.8	651(46.2)
40대	49.3	23.2	27.5	0.0	142(10.1)
50대	44.4	17.8	35.6	2.2	45(3.2)

주: 본 문항은 1명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1,409명이 응답하였음

□ 연계 신청 안내받은 경험

- 퇴직 또는 이직을 할 때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연계신청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퇴직 시 관련 연금기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이 13.9%, 이직 시는 14.5%,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55.5%임

〈표 3〉 퇴직 또는 이직 시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연계신청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퇴직 시	이직 시	받은 적 없음	기타	계
연계신청 안내받은 경험	234(13.9)	244(14.5)	934(55.5)	270(16.1)	1,682(100)

□ 연계제도 신청여부

- 연계제도 신청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1,410명의 응답자 중 31명(2.2%)만이 연계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계제도의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첫째,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계법상 60세에 도달해야 연계제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임
 - 향후 잠재신청자가 60세에 도달하여 연계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두 번째 이유로 현재 국민연금과 지역연금 이동자 중 40~50대 대부분이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임
 -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이므로 연계제도 신청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4〉 연계제도 신청여부

(단위: 명, %)

구분	신청	미신청	계
연계제도 신청여부	31(2.2)	1,377(97.8)	1,408(100.0)

주: 본 문항은 2명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1,408명이 응답하였음

-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했다고 응답한 3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계제도신청 이유를 분석한 결과,
 - 전체 응답자 31명 중 77.4%가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하였고, ‘다른 노후준비 수단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12.9%임

〈표 5〉 (현재 연계제도 신청자 중) 연계제도를 신청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음	다른 노후준비 수단이 없음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	계
연계제도 신청이유	24(77.4)	4(12.9)	3(9.7)	31(100.0)

- 현재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연계제도를 신청할 의향을 알아본 결과, 총 1,378명 중 43.4%가 ‘신청할 의향이 있다’ 고 응답한 반면, ‘없다’ 는 20.7%, ‘잘 모르겠다’ 는 35.9%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높은 연령일수록 신청할 의향이 높아지며, 잘 모르겠다는 비중 또한 감소하였음

〈표 6〉 (현재 연계제도 미신청자 중) 향후 연계제도 신청할 의사여부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598(43.4)	285(20.7)	495(35.9)	1,378(100.0)
29세 이하	42.7	17.9	39.4	564(40.9)
30대	40.8	23.9	35.2	639(46.4)
40대	53.0	17.4	29.5	132(9.6)
50대	60.5	18.6	20.9	43(3.1)

- 향후 연계제도를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598명을 대상으로 신청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응답자 중 77.6%가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금융상품 등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라는 응답이 12.9%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고 응답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연령이 낮아질수록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짐

〈표 7〉 (현재 연계제도 미신청자 중) 향후 신청하려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음	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호감을 가짐	다른 노후준비 수단 없음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	기타	계
전체	464(77.6)	6(1.0)	31(5.2)	77(12.9)	30(3.3)	598(100.0)
29세 이하	70.1	1.7	7.9	15.4	5.0	341(40.3)
30대	81.2	0.0	3.1	13.0	2.7	261(43.6)
40대	84.3	1.4	5.7	7.1	1.4	70(11.7)
50대	92.3	3.8	0.0	3.8	0.0	26(4.3)

3.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2%가 ‘연금 간 이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계제도를 안내’ 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TV · 신문광고 등 매체를 통한 홍보’가 28.9%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동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많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선호하고 있음
- 이 외에 ‘노후준비 차원에서 연계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꼽았고, 기타의견으로는 ‘제도 불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방안 필요’, ‘정보를 대상자에게 확실히 전달할 것’ 등이 있음

〈표 8〉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단위: 명, %)

구분	매체 통한 홍보	이동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안내	인터넷광고, 홈페이지 등 통해 홍보	노후준비차원에서 연계제도에 대한 교육실시	기타	계
전체	407(28.9)	722(51.2)	97(6.9)	144(10.2)	39(2.8)	1,409(100)
29세 이하	32.6	46.1	7.5	11.7	2.1	571(40.5)
30대	27.2	54.7	6.3	8.8	3.1	651(46.2)
40대	25.4	52.8	7.7	9.9	4.2	142(10.1)
50대	17.8	62.2	4.4	13.3	2.2	45(3.2)

주: 본 문항은 1명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1,409명이 응답하였음

- 향후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퇴직 또는 이직할 때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의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1%가 ‘그때 가서 결정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연계제도 신청’ (19.4%), ‘연금 수령’ (16.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연계제도를 신청할 것’ 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때 가서 결정 하겠다’ 는 응답비중이 증가함

〈표 9〉 향후 직역연금수급권 확보시 퇴직 또는 이직할 때 국민연금 추가가입 의향여부 (단위: 명, %)

구분	연금을 수령	연계제도 신청	그때가서 결정	관심 없다	계
전체	119(16.4)	141(19.4)	436(60.1)	29(4.0)	725(100.0)
29세 이하	15.2	18.1	63.8	2.9	315(43.4)
30대	17.7	17.7	59.9	4.7	317(43.7)
40대	13.9	29.2	50.0	6.9	72(9.9)
50대	23.8	33.3	42.9	0.0	21(2.9)

- ‘연금을 수령하겠다’ 고 응답한 119명을 대상으로 연계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노후준비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가 3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계제도를 잘 몰라서’ (20.2%), ‘노후대책이 충분해서’ (18.5%), ‘당장 써야할 곳이 많아서’ (16.0%)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대책이 충분해서’ 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준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는 응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기타 의견으로는 대체로 ‘연계제도나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서’ 와 ‘미래의 불확실성’ 등이 있었음

〈표 10〉 직역연금 수령(예정자 중) 향후 신청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노후대책이 충분해서	연계제도를 잘 몰라서	당장 써야할 곳이 많아서	노후준비에 별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기타	계
전체	22(18.5)	24(20.2)	19(16.0)	45(37.8)	9(7.6)	119(100.0)
29세 이하	14.6	27.1	8.3	47.9	2.1	48(40.3)
30대	16.1	16.1	23.2	33.9	10.7	56(47.1)
40대	30.0	20.0	20.0	20.0	10.0	10(8.4)
50대	60.0	0.0	0.0	20.0	20.0	5(4.2)

- 현행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수의 응답자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 외에도 개별적으로 연계제도를 안내해 줄 것,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신뢰성 제고, 연금 간 이동을 했을 경우 복잡한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계해 줄 것 등의 의견이 있었음

4. 정책적인 시사점 및 제도발전방향

□ 연계제도 인식관련

-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들이 노후준비의 시급성 및 공적연금제도를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연금제도 간 이동자의 대다수(86.6%)가 노후준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적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응답비율(38.2%)도 높아, 노후 준비가 시급하며 노후준비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향후 연계연금을 신청하려는 이유로 연계제도가 노후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77.6%)에서 알 수 있듯이 연계제도를 노후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계제도가 큰 무리없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계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중이 높은 반면에, 공적연금제도 간 이동자의 49.0%가 연계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자 대상으로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계제도 홍보방향

- 연계연금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방안으로는 연금관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될 것임
 -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금관리기관을 통해 연계제도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47.7%)이 가장 높았고, 연계연금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연금제도 간 이동 시 연금기관의 안내(51.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행정비용이 지금보다 더 소요될 지라도 연금관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연계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통상 한 연금제도로부터 다른 연금제도로 이동할 때, 즉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홍보노력이 필요함
- 공적연금간 이동자가 이직할 때 1차적으로 기존에 가입했던 제도 관리기관에서 연계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이 이동자가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에 해당 연금관리기관에서 재차 연계제도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홍보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연계제도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노력과 함께, 관련 공문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쉽게 연계제도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발전방안 모색 필요

- 공적연금 재정적인 측면에서 연계제도 도입효과를 살펴보면 제도도입 초반에 반환일시금 지급이 억제됨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재정개선 효과가 있으나, 연계선택으로 인한 연계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점부터는 연계제도 도입전에 비해 급여지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식조사결과와 유사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자의 50%가 연계를 선택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연계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여 2040년대부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70년에는 약 3조 5천억원(2010년 불변가)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²⁾
-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연계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안내 및 홍보노력에 치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계제도가 공적연금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윤석명 (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129)
신화연 (사회보험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02-380-8139)

2) 윤석명 외(2010)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전망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